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개인정보 동의 없이 신용불량정보를 이용하겠다는 것은 인권 침해  
복지사각지대 해소는 문턱 높은 제도의 개선이 선제되어야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의견

본 의견서는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에 관한 것임. 사회보장급여법은 지난 2014년 송파세모녀 사건 이후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빈곤층을 발굴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된 법임. 개정안의 주요사항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정부가 처리할 수 있는 정보의 목록에 개인신용정보를 추가하는 것(안 제12조)과 통합사례관리의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안 제42조의2)임.

## 1. 정보 주체인 개인의 동의 없이 개인 신용정보를 열람하는 것은 정보인권 침해(안 제12조).

- 현행 사회보장급여법은 지원대상자, 사회보장급여를 필요로 하는 사람(법 제2조제4호)의 직권발굴 등을 통한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총 13개 기관으로부터 23종의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고 있음. 이번 사회보장급여법 개정안은 현행법 제10조에 의한 직권발굴 조항과 관련하여 제10조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제12조제1항제6호에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제2항제1호에 따른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신용정보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위기상황에 처해 있다고 판단한 사람의 개인신용정보로서 금융위원회 위원장과 협의하여 정하는 개인신용정보를 신설한다는 것임.
- 과거의 직권발굴과 관련한 사회보장정보 시스템의 행정정보들과는 달리 개인정보인 신용불량 정보를 개인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 없이 일괄 수집한다는 취지임. 이 부분은 행정기관이 생성한 내부의 행정정보가 아닌 금융기관이 생성한 개인의 민감정보라는 점에서 적어도 정보 보유주체인 개인의 개별적인 동의나 포괄적인 동의가 필요함.
- 현재도 23종에 이르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함에 있어서 해당 정보의 보유주체인 개인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있으며, 이들 정보 중에는 민감정보로 분류할 수 있는 자살 고위험, 자살·자해시도 등의 정보도 개인의 동의 없이 수집·처리되고 있다는 것임. 이러한 상황에서 또 다시 개인대출정보와 신용카드대출정보, 연체정보, 세금체납정보 등 민감정보인 개인신용정보를 정보 보유주체의 동의 없이 수집·처리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제4조제2항 '개인정보의 처리에 관한 동의 여부, 동의 범위 등을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와 충돌할 뿐만 아니라 지원대상자의 인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음.
- 정부의 주장처럼 생활고로 인한 소액 연체가 신용불량으로 이어질 수 있는 가능성은 있겠지만 저소득층일 수 있다는 추측만으로 개인의 정보를 동의 없이 처리하겠다는 것은 차별임. 따라서 개정안은 개인정보 보호 차원에서 폐기되어야 마땅함.

- 따라서 그 수정 대안으로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일괄 조회권은 인정하고, 해당 정보 주체에 사회보장정보 전산망에 등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받는 경우에만 전산입력(=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음. 반면 동의를 없으면 즉시 폐기하도록 의무화하는 등의 대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2. 사회보장급여법의 실효성 점검 필요.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 이후 복지사각지대 해소 현황을 살펴보면 실제 실적은 미미함. 보건복지부 보도자료<sup>1</sup>에 의하면, 2016년 1월부터 9월까지 총 3차에 걸쳐 개인정보의 수집·처리를 하여 발굴한 지원대상자는 20만 9,007명인데 이들 중 실제 복지서비스를 지원받은 대상자는 3만 7,420명으로 17.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음. 그러나 서비스 지원을 받은 사람 중에서 기초생활보장이나 차상위지원, 긴급복지지원 등 공적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대상자는 2만 6,997명에 불과하였고 1만 423명은 민간서비스 지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음. 결국 17만 1,587명(82.0%)은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음.

<표1>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현황 (단위 : 명, %)

구분		인원	비율	
발굴된 지원대상자(A)=(B)+(C)+(D)		209,007	100.0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은 대상자	공적서비스 지원 받은 대상자	소계(B)	26,997	12.9
		기초생활보장 지원	3,374	1.6
		차상위층 지원	3,640	1.7
		긴급복지 지원	973	0.4
		기타공공서비스	19,010	9.0
	민간서비스 지원 받은 대상자(C)	10,423	4.9	
복지서비스 지원을 받지 못한 대상자(D)		171,587	82.0	

주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6.11.1.)

- 또한 김상희 의원실 보고자료<sup>2</sup>에 따르면, 정부가 발굴한 지원대상자 20만 9,007명의 60.9%에 이르는 12만 7,458명은 과거에 공적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었으나 탈락 또는 지원이 중단된 사람들임. 이들 중 기초생활보장 지원을 받다가 탈락 또는 지원 중단된 기초생활보장지원 경험자는 2만 8,192명(22.1%)이고, 차상위층 지원 경험자는 1만 5,789명(12.4%), 긴급복지 지원은 7,840명(6.1%), 기타 공적서비스 지원 경험자는 7만 5,637명(59.3%)인 것으로 나타났음. 이들은 공공부조 내지 그와 유사한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험이 있는 사람들로서 정부에 의해 재차 사회보장급여가 필요한 대상자로 발굴되었지만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실제 공적서비스로 연결되지 못하고, 지원을 받았다고 해도 대부분 민간

1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6.11.1.

2 김상희 의원실 보도자료, 2016.9.30.

서비스의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음.

- 이처럼 정부가 무려 23종에 달하는 개인정보를 수집·처리하여 지원대상자를 발굴하고 있음에도 발굴한 지원대상자 중 실제 공적 서비스지원(기초생활보장, 차상위, 긴급복지지원)을 받은 사람이 3.7%에 불과하다는 것은 정부의 제도 자체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문제를 안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으며, 더 많은 발굴만으로는 복지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없음이 명백함.

### 3. 복지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제도 개선이 선행되어야 함.

- 최저생계비 미만의 빈곤인구 비율은 2008년부터 2014년까지 8-9% 정도에 달하고, 상대빈곤율은 13~14%정도임. 그러나 수급자의 비율은 2-3%정도로 낮은 수준임. 이는 기초생활보장제도가 취약계층을 포괄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부양의무자 기준 등이 제도적 장벽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는 원인임.

<표2> 국민기초생활제도 현황 추이 (단위 : 천 명, %)

구 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수급자수	1,530	1,569	1,550	1,469	1,394	1,351	1,329
수급자비율	3.1	3.2	3.2	2.9	2.7	2.6	2.6
절대빈곤율	8.8	9.5	8.8	8.8	8.5	8.6	8.6
상대빈곤율	14.2	14.1	13.8	13.8	13.7	13.4	13.3

주 : 2016 보건복지통계연보(보건복지부), 2015 빈곤통계연보(한국보건사회연구원), 김용익 국회의원 제공사료(2016년 2월 13일 복지부 제출자료)

- 실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신청시 탈락의 가장 큰 이유로 부양의무자의 소득과 재산이 기준보자 많다는 것이 54.5%로 나타남. 그러나 정부는 수급자에게 부양의무자의 혈족이 아님을 증명하라면 유전자 검사를 요구하는 등 비인권적인 행위를 강요하기로 함.
- 또한 실제 주거불명일 경우 기초생활보장 신청의 접수 자체를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수급자가 되기 어려우며, 정부가 발간한 사업안내서에도 최소거주기간(1개월)이상 거주가 확인된 경우에만 급여를 지급하고 지속거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등 실질적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그리고 긴급복지지원제도의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정의하는 '위기상황'에 해당되어야 하나 위기상황의 정의가 모호하여 신청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 그리고 법률상으로는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등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우선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만 사후 심사 결과 문제 발생시 비용 환수조치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긴급복지지원제도는 동일한 사유에 의해 재신청을 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 이처럼 제도의 높은 장벽으로 서비스 혜택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정부가 수집·처리하는 개인정보의 목록을 증가시키는 것이 사각지대 해소의 만능처방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따라서 사각지대를 발생시키는 제도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함.

#### 4. 제대로 된 통합사례관리가 이루어지기 위해 실효성 등에 대한 검토 필요(안 제42조의 2).

- 안 제42조의2에 통합사례관리 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통합사례관리에 대한 지원업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경우, 지원 및 지도감독 기능의 실효성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통합사례관리사는 대상자와 지속적인 상담을 통해 공공 및 민간자원을 연계하는 등 문제해결과를 위해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는 필수 인력이라면 제42조의2 제2항 ‘...통합사례관리사를 둘 수 있다’를 ‘...통합사례관리사를 둔다’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그리고 통합관리사 인력에 대해 그 전문성을 고려하여 별도의 직렬로 구분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서울시의 ‘전문관’제와 같이 공무원 인사체계 내에서 순환보직제를 제한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음.
- 안 제42조의2제3항에 ‘통합사례관리사의 자격·업무 등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음. 그러나 통합사례관리는 포괄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 <sup>참</sup>

---

## 참여연대 정책자료

###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에 관한 의견서

발행일 2017. 02. 26

발행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 : 남찬섭 동아대 교수)

담당 이경만 간사 02-723-5056 welfare@pspd.org

Copyright ©참여연대, 2017 ※본 자료는 참여연대 웹사이트에서 다시 볼 수 있습니다.



정부보조금 0%, 회원의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표전화 02-723-5300 회원가입 02-723-4251

주소 [03036]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9길 16

홈페이지 [www.peoplepower21.org](http://www.peoplepower21.org) 공식SNS [트위터](#) [페이스북](#) @peoplepower21

---